<완료보고 자료>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2012. 12. 21

연 구 기 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문헌정보학과 곽승진 교수

목 차

I. 연구 개요

II.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III. 납본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IV. 납본 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V. 법제화 방안 수립

VI. 결론

I. 연구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1990년 이후 디지털자료의 급증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자발적, 의무적 납본을 채택하거나 디지털자료 의 납본을 계획 중에 있음

- 현행 도서관법 제20조의 2항(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온라인자료의 납본은 미흡한 상태임. 따라서 보다 능동적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수립이 필요

I. 연구 개요

❖ 장애인도서관 디지털파일 납본현황

➢ 디지털파일 납본현황

연도	납본종수	참여출판자 수 (중복집계)	보상금액	납본율
2010	451	2,182	225,584,700	56.2%
2011	345	2,486	312,048,100	69%
계	796	4,668	537,632,800	

➢ 디지털파일 납본요청에 대한 반응

납본요청기관	수락	거절
국립중앙도서관	20.8%	67.9%
국립중앙도서관 외 타기관 또는 개인	17.9%	70.3%

❖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점차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납본율은 미흡한 상태
(디지털파일 납본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11. 국립중앙도서관)

I. 연구 개요

❖ 연구 내용

-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관련 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조사 · 분석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디지털자료 법제화 방안 수립

I. 연구 개요

❖ 연구원 편성

본 연구진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문헌정보학과 곽승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3명의 책임연구원과 1명의 보조연구원 등 총 5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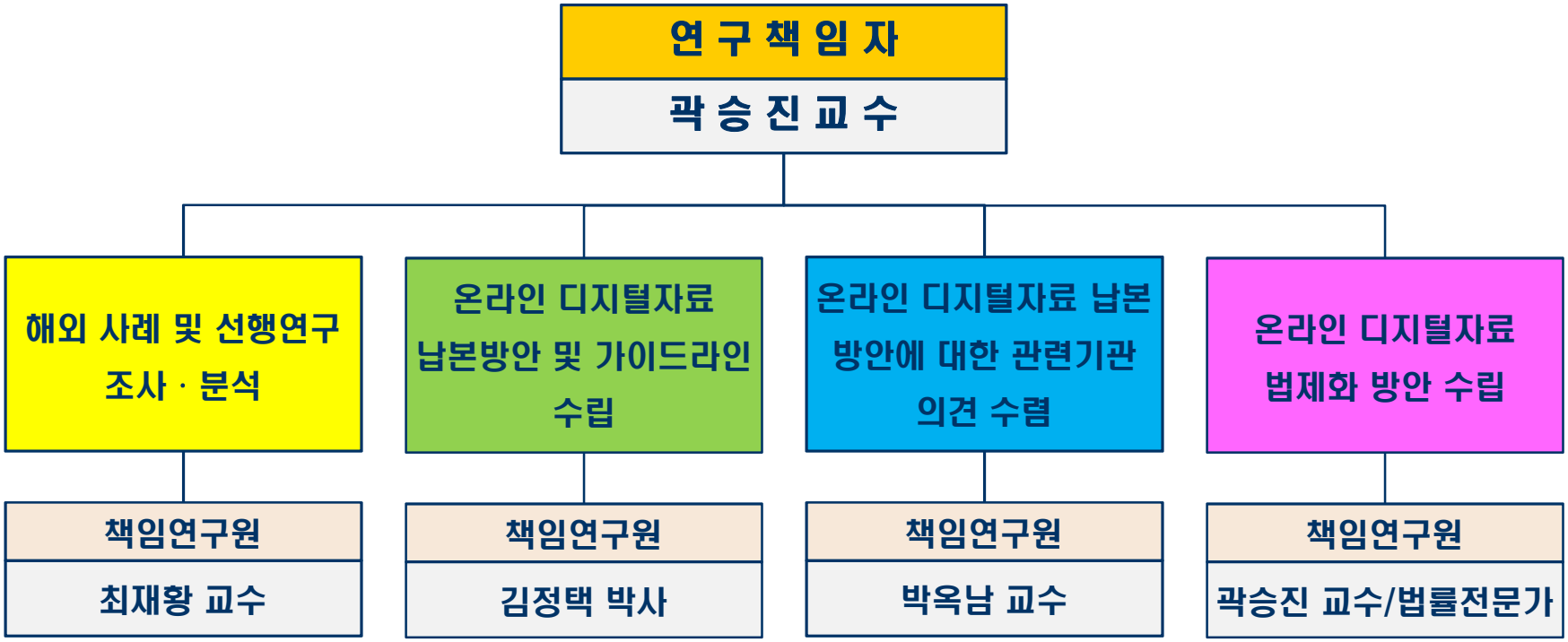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위원 : 법조계, 저작권계, 문헌정보학계, 전자출판계, 도서관계 분야 전문가 등

I. 연구 개요

❖ 연구추진계획(일정)

[2012.9.13 ~ 2012.12.20]

세부일정	추진일정(2012년)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착수 및 자문위원회 구성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자문위원회(1차, 2차,				
○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요소 및 법제화 방안 수립				
○ 사업완료 및 보고서 제출				

II.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해 디지털 출판물을 납본 받는 국가	법률 제정에 의하지 않고 디지털 출판물을 보존하는 국가
1. 영국	11. 호주 (PANDORA)
2. 뉴질랜드	12. 네덜란드 (e-Depot)
3. 캐나다	13. 미국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덴마크	
8. 핀란드	
9. 노르웨이	
10. 스웨덴	

II.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1. 영국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납본도서관법 2003」 (The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2013년 부터 가능			

□ 특 징

- 2011년 4월 5일, 문화 · 미디어 · 스포츠부(DCMS)는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을 발표
- 녹음자료와 영화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 온라인 출판물의 상세한 수집범위 및 절차 마련
-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의 제3부(납본), 제4부(허용된 활동)에서 비인쇄 저작물의 범위, 절차 그리고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해 규정
- 납본자료의 이용 시, 시각장애인의 자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에 대한 동시접근을 1명으로 제한

II.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1. 영국 (2/2)

□ 주요 법조항 (납본도서관(비인쇄 저작물) 규정안 2013)

구 분		내 용
제3부 납본	17조	(1) 저작물에 대한 다음 설명은 인쇄가 아닌 매체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것이다. (a) 오프라인에서 발행된 저작물 (b) 온라인에서 발행된 저작물 (2) 그러나 위 (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인트라넷 등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저작물 (b)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저작물
	19조	(1) 영국도서관위원회(British Library Board)는 오프라인에서 발행된 모든 저작물의 사본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2) 발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본을 영국도서관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22조	규정 19 또는 규정 21에 따라 전달된 저작물의 출판사는 이와 동시에 다음을 전달해야 한다. (a) 개인이 해당 저작물을 읽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도구 및 데이터 포함)의 사본 (b) 해당 저작물과 함께 대중에게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
제4부 허용된 활동	28조	납본도서관은 동일 자료의 이용을 한 번에 한 컴퓨터 터미널로 제한해야 한다.
	31조	(1) 납본도서관은 관련 자료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중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형태로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다. (2) 납본도서관은 도서관의 건물에서 동일한 관련 자료의 시각장애인용 사본이 한 번에 단 하나만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2. 뉴질랜드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2003」(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Act 2003)
-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National Library Requirement (Electronic Documents) Notice 2006)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법 2003」 제31조에 따라 2006년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을 발표
-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고시 2006]은 유형의 고착물인 CD, DVD 등 전기적 또는 광학적 매체와 저장장치로 유통되는 전자문헌에 대한 납본요강을 제시하는 규칙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2005년부터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목적의 웹 아카이빙으로 인터넷 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2. 뉴질랜드 (2/2)

□ 주요 법조항 (국립도서관 전자문헌 납본 고시 2006)

구분	내용
제3조 (해석)	오프라인 문헌은 인터넷 문헌이 아닌 전자 문헌을 의미하며, 다음의 수단으로 저장 또는 사용되는 전자문헌을 포함한다. (a) 자기 매체 (예를 들어 플로피 디스크, 하드드라이브,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b) 광학 매체 (c) 전자적 저장장치 (예를 들어 USB 또는 메모리 카드) 광학 매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콤팩트디스크(CD)와 그 이형(異形) (b) DVD와 그 이형 출판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오프라인 문헌의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이나 요금 지불 등과 같이) 공중이 문헌을 입수하는 데 제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공문헌을 발간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공중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문헌의 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인터넷 문헌의 경우, 문헌에 대한 접근 제한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문헌을 공공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조 (오프라인문헌 납본요건)	모든 오프라인 문헌 출판사는 문헌이 처음 출판된 후 20일 내 다음과 같이 문헌 1부 이상을 출판사 비용으로 국립도서관장에게 납본해야 한다. (a)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 매체 또는 장치 2개 (b) 다음 경우에는 1개만 납본한다. (i) 단일 문헌 자체로 가격이 1,000달러가 넘는 경우 (ii) 문헌의 연간 구독 비용이 3,000달러가 넘는 경우

3. 캐나다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캐나다 도서관 · 기록관법 2004」(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 「출판물 납본규정 2006」(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캐나다에서 출판물의 납본은 당초 인쇄도서에서 1965년에는 연속간행물이 추가되었고, 1969년 녹음자료, 1978년 시청각자료, 1988년 마이크로필름자료, 1993년 CD-ROM 및 비디오녹화자료 등으로 확대
- 캐나다에서 납본제도로 수집되는 출판물은 인쇄물부터 인터넷자원까지 유·무형의 매체로 출판되는 모든 형식의 출판물을 포함
- 2004년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보존소가 통합되어 출판물, 기록유산의 수집, 보존, 이용을 단일기관이 담당하여 운영

3. 캐나다 (2/2)

□ 주요 법조항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구분	내용
제2조 (비도서출판물 납본)	사서 및 기록관이 입수하기 쉬운 종이 이외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물과 그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 출판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① 출판물에 포함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해야 한다. ② 해당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보안시스템이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불용화 해야 한다. (b)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할 때, ①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것으로 출판자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판물에 첨부되는 매뉴얼 사본을 포함하여,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출판물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간일, 판형, 주제, 저작권정보 등을 포함하여, 출판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제4조에서 언급된 부류의 출판물을 제외하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1부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물이 해당된다. (a) 음악적 녹음자료 (b) 2개 이상 물리적 부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다매체 출판물 (c) 제작부수 100부 이하 출판물 (d) 요청에 의해 100부 이하 제작된 출판물로부터 복사 제작한 출판물 (e) 온라인 출판물

4. 프랑스

□ 주요법 (legal framework)

- 「유산법」(Code du Patrimoine) – 「DADVSI 2006」와 「납본법 1992」을 포함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자와 권리 및 기타 권리에 관한 법 2006」(일명 DADVSI 법)
- 「납본법 1992」(Legal Deposit Legislation) – 2006년「납본에 관한 시행령 」개정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DADVSI 2006」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일반에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부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또는 메시지들도 납본에 해당한다" 고 명시
- 유산법 상에서는 납본의 책임을 프랑스국립도서관, 프랑스국립방송보존문서관(INA), 국립영상자료보존센터(CNC)로 분산하여 운영.
- 「DADVSI 2006」와 「납본에 관한 시행령 2006」에 의한 디지털출판물 납본의 매커니즘
  ①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자동 수집
  ② 출판사에 의한 디지털 파일 납본
  ③ 인쇄본을 대체할 목적으로 인쇄본과 일치하는 디지털 파일의 납본

5. 독일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German National Library Law 2006)
-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 2008」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독일국립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공표저작물 납본의 상세 내역을 규정한 「미디어 자료의 법적 납본에 관한 규정」을 2008년 마련
- 유체의 공표저작물의 납본상태 및 규모 그리고 세부절차를 명시(제2조, 제5조), 인터넷 공표저작물(무체의 공표저작물)의 상태 및 납본대상,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제7조)
- 법령 상에서 정의된 유체의 공표저작물이란 종이, 전자적 저장매체 및 다른 매체상의 모든 표현물을 말하며, 무체의 공표저작물이란 공개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말함

5. 독일 (2/2)

□ 주요 법조항 (독일국립도서관 공표저작물에 관한 납본 규정 2008)

구분	내용
제2조 (유체의 공표 저작물 상태 및 납본 대상의 규모)	(1) 공표저작물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공표 저작물이 가능할 경우, 지속성이 가장 긴 형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의 제작은 충분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전자 저장장치 형태의 공표 저작물은 도서관의 기준에 따라 저작물 보관을 위한 사본(archivial print)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납본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요구할 경우 납본되는 사본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접근 통제 조치는 해제 또는 해제를 위한 수단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제7조 (무체의 공표 저작물 상태 및 납본 대상의 규모)	(1) 무체의 공표 저작물(인터넷 공표저작물)은 보편적인 형태, 보편적인 보조 도구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독일 국립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 의무자가 인터넷 공표 저작물의 전자 수집을 도서관과 협의할 경우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공표 저작물의 납본은 2조 3항에 따른다. (2) 납본 대상은 그 자체로는 납본 대상이 아닐지라도 인터넷 공표저작물에 속하는 모든 형태 또는 전자 형태의 요소,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한다. 특히 (시장) 보편적이지 않은 인터넷 공표저작물의 전시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납본 의무자에 의해 발행되는 보조 도구도 포함된다. 이것은 인터넷 공표저작물과 함께 납본되거나 전자 수집을 위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일본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국립국회도서관법 2012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5조의 3)」(1948년 제정, 2012년 개정)
- 「저작권법 2010 (제42조의 3)」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2000년 오프라인 자료를 새롭게 납본 대상에 포함
- 2002년부터 인터넷 자원의 선택적 축적실험 사업인 WARP(Web ARchiving Project)를 수행
- 2009년부터 국가 ·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 기관이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자료를 발신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
- 2012년 私人(민간)이 출판하는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립국회도서관으로의 송신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 가결

6. 일본 (2/2)

□ 주요 법조항 (국립국회도서관법 2010)

구 분	내 용
제24조	① 국가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국가의 제 기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출판물(기밀 취급되는 것 및 서식, 견본,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공용, 또는 외국정부 출판물과의 교환 및 기타 국제적인 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30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제25조3	① 관장은,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제24조 및 제24조2에서 규정한 사람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인터넷 자료(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에 이용가능 하게 된 것을 말함)를 국립국회도서관 사용에 관계되는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수집할 수 있다.

7. 덴마크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출판물 납본법 2004,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징

- 1998년에 발효된 「출판물 저작권 납본법」에 의해 오프라인 자료와 정적 온라인자료가 납본 대상
- 현행 납본법은 「출판물 납본법 2004)」이며 인터넷 자원을 고려하여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5년 부터 시행
- 「출판물 납본법 2004」는 총 6부(part), 25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전자출판물과 관련 있는 법률은 제3부(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출판물, 5개 조항), 제4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3개 조항), 제5부(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1개 조항)

7. 덴마크 (2/2)

□ 주요 법조항 (출판물 납본법)

구 분	내 용
제8조	(1) 덴마크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은 납본대상이다.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접근이 허용되는납본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제9조	명확히 덴마크에게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하여,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부과된다.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의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진다.
제10조	납본의무자는 요청이 있는 대로 접근 코드에 대하여 납본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접근과 자료의 사본생산, 일반 공중에 대한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납본 의무자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핀란드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 (Act on the Deposit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material (1433/2007)」
- 「저작권법(Copyright Act 404/1961)」 ※2005년 개정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200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법률」이 기존의 납본법(1980년 제정)과 필름보존법(1984년 제정)을 대체
-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부터 새로운 납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작권법과 납본법이 상충되면서 저작권법의 개정때까지 지연됨
- 새 납본법은 CD-ROM이나 DVD같은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출판물, 음악, 이미지, 전자기록, 필름, 라디오 및 TV방송 자료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

8. 핀란드 (2/2)

□ 주요 법조항 (문화유산의 납본 및 보존 법률)

구 분	내 용
제3장(온라인 자료) 제6절(온라인 자료의 검색과 저장)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유접근 온라인 자료의 검색과 보존의 의무는 핀란드 국립도서관에 있다. 수집되고 저장되는 온라인자료는 각기 다른 시기에 공중에 의해 이용되는 상징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전형으로 구성된다. - 핀란드 국립도서관은 위와 같이 수집되고 보전되어질 온라인 자료의 범위, 내용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제3장(온라인 자료) 제7절(온라인 자료 수집, 보존에 대한 권능부여와 온라인 자료의 공급)	-온라인출판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로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자료들이 수집, 보존되도록 법적 권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수집, 보전을 수인할 의무는 네트워크상의 사소한 정보, 시각적 청각적 내용, 뉴스그룹과 체팅 그룹에서 다루어진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자료의 공급의무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온라인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의 기간은 그 자료가 공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9. 노르웨이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노르웨이 납본법 1989 (The Norwegian Legal Deposit Act 1989)」※2013년 개정 예정
-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1990)」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인쇄자료, 필름, 지도, 악보 등과 함께 라디오와 TV의 프로그램 녹화물을 수집하고 있는 점이 특징
-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 1990」은 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 음향매체, 비디오자료, 전자문헌, 방송녹화자료 등에 대해 각각의 납본부수와 수집범위, 부속정보의 내역 등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운영규정을 제시
- 2008년 국립도서관과 출판사 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납본자료에 대한 수집 및 이용권한을 인쇄원본에서 디지털 파일로 확대함

9. 노르웨이 (2/2)

□ 주요 법조항 (납본법 및 납본법 시행령)

구 분	내 용
노르웨이 납본법 제4조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납본되어야 한다. • 종이문헌 또는 유사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7부 • 녹음, 필름, 비디오, 전자문헌, 기타 복합매체는 2부 •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
노르웨이 납본법 시행령 제30조 (전자문헌 범위)	- 최소 50부 이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켓, 자기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전자문헌은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 온라인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문헌에 대해서는, 개별 문헌마다 납본처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경우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10. 스웨덴 (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스웨덴 국가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법령(2002)」(Legal Deposit Act 1979 + Decree 2002:287)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1978년 납본법 개정으로 특정 비디오, 오디오 레코딩 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포함
- 디지털자원의 증가속에서 출판된 전자 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6년 Kulturarw3 프로젝트를 시작
-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웹 아카이빙에 관한 정령을 마련

10. 스웨덴 (2/2)

□ 주요 법조항 (국립도서관 웹 아카이빙에 관한 정령)

구 분	내 용
제2조 (정의)	① 본 정령에 있어서 디지털 문화유산 계획(이하 계획)이란 인터넷 상으로 스웨덴 자료 형태로 발표되는 국가의 디지털 문화유산을 자동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 보존 나아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도서관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 보호법(1998년 법령 제204호)은 본 정령 또는 동법 제2조에서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기록된 개인은 이 정령에 의해 인정되는 처리에 반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11. 호주 (1/2)

□ 주요 보존정책

- 「저작권법 제201조(the Copyright Act, 1968)」
-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호주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납본 관련법을 제정, 시행
- 디지털자료는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정 납본 대상이 아님
- 호주국가도서관은 비록 법 규정의 지원은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 CD-ROM, 컴퓨터디스크 등 오프라인자료를 출판사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납본을 수행
- 1996년부터는 PANDORA (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of Australia)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자료를 수집

11. 호주 (2/2)

□ 주요 법조항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2007)

구분		내용
제4장 호주의 전자자료	4.2	물리적인 형태의 전자자원은 물리적인 매체에 담겨 출판된 것이며, 디지털 자료(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CD-ROM, DVD, VCD)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전자자료(예를 들면,카세트테이프, 비디오)등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
	4.3	온라인 자료란 웹상에 또는 이메일과 같은 일부 다른 수단에 의해 인터넷상에 배포된 디지털 자료이다. 만일 온라인 자료가 유료이든지 무료이든지 간에, 웹상에서 공적으로 입수가능하다면 장서개발 정책의 영역에 따라 온라인 자료는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4.4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설정한 대로, 자료의 형태에 대한 지침과 일치하는 범위에 속한다면, 디지털이미지, 이메일 수집물, 음향자료와 같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다른 자원들도 수집한다.
	4.6	국립도서관은 호주의 장서를 위하여, 원래 디지털 자원인 물리적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수집한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 납본법안이 계류 중이므로,국립도서관은 자발적인 납본을 통하여 CD-ROM, DVD, 플로피디스크를 포함한 물리적 형태의 호주 출판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도록 출판사와 제작자와 협상한다.
	4.11	국립도서관은 선정된 호주의 온라인 자원을 호주의 웹 아카이브인 판도라(PANDORA)에서 수집하고 보존한다. 국립도서관은 본토의 주립도서관과 자치지역도서관, 국립영화음향자료원, 호주전쟁기념관, 호주원주민연구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12. 네덜란드(1/2)

□ 주요법 (legal framework)

- 국립도서관의 "e-Depot" 프로젝트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징

-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인(Koninklijke Bibliotheek, KB)은 1974년부터 자발적인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는 네덜란드출판협회와의 협정에 의해 인쇄자료의 자발적 납본 시행
- 1995년에 오프라인 자료를 납본 받기 시작한 KB는 1998년부터는 출판사와의 협정에 의해 온라인자료도 e-Depot을 통해 자발적으로 입수
- 1995년부터 전자출판물의 장기 보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e-Depot 탄생
- e-Depot은 디지털 객체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12. 네덜란드(2/2)

□ e-Depot에 저장된 콘텐츠 유형

- 네덜란드출판사(네덜란드출판협회와의 자발적 납본 협정을 준수하는 출판사)가 출판한 디지털 출판물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과 아카아빙 협정을 맺은 국제적 출판사의 출판물
- 네덜란드 대학 리포지토리에서 수집한 과학연구결과물
- 선별한 네덜란드 웹사이트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이 수행한 국가적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결과물

□ e-Depot과 아카이빙 협정을 맺은 출판사

- Elsevier, Kluwer Academic Publishers, BioMed Central, Blackwell,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 & Francis, Sage, Springer, Brill Academic Publishers, Atlantis Press, IOS press 등

13. 미국(1/3)

□ 주요법 (legal framework)

- 「저작권법 제407조(the Copyright Act」
- 미의회도서관 장서정책 선언 추가지침(전자자원, 웹아카이빙)

□ 납본대상 디지털자료 유형

오프라인 출판물	무료 온라인 자료	유료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구조적 데이터
-	-	-	-

□ 특 징

- 저작권법 제407조를 통해 출판되는 모든 자료는 의무적으로 저작권국에 납본하도록 명시
- 전자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정의한 법령은 현재 논의중
- 2008년에 마련된 LC의 장서개발정책 추가지침(전자자원 및 웹 아카이빙)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수집과 웹 아카이빙에 대한 국가도서관 차원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수집대상 전자자원의 선정 기준, 보존우선순위를 비롯해 웹아카이빙의 범위와 수집정책이 상세히 언급됨

13. 미국 (2/3)

□ 주요 법조항 (미의회도서관 장서정책 선언 추가지침)

구분		내용
전자자원	정의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 이란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저작을 지칭한다. (1)원격 접근 또는 (2)직접 방문 접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고정된 매체)가 포함된다
		"수집(Collect)" 이란 LC가 소장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선정된 전자자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LC가 영구적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자원이 포함된다.
	일반 지침	LC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높이 부합하는 전자자원을 습득한다. • 미국 의회와 연구자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에 봉사할 수 있는 유용성 • 정보 제공자의 명성 • 제공되는 유일정보의 양 • 학술 콘텐츠 • 위기에 있는 자료(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자원) • 일시적인 자원(예, 회색문헌)

13. 미국 (3/3)

□ 주요 법조항 (미의회도서관 장서정책 선언 추가지침)

구분		내용
웹 아카이빙	범위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보존하여 이를 의회와 미국 대중에게 제공하는 LC의 전통적 기능은 웹 사이트를 비롯한 디지털 자료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LC는 "태생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던" 자료 (예를 들면,아날로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제공하는데, 미국에서 이들 디지털 자료들이 갖는 가진 지적, 상업적, 창의적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수집(Collect)" 이란 LC가 소장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선정된 전자자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LC가 영구적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자원이 포함된다.
	수집 정책	LC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높이 부합하는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영구 보존한다. 첫째, 현재와 미래에 의회와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봉사할 수 있는 유용성 둘째, 학술적 콘텐츠 셋째, 자료 손실의 위험성(순식간에 없어지는 웹 사이트의 특성 때문에) 넷째, 정보의 유통가능 정도

II.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 분석

◈ 시사점

-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개발과 전자출판의 출현, 출판도구로서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급속히 확산
-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여유도 없이 짧은 기간에 소멸
  - ✓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 : 1998년에 존재했던 인터넷 사이트 중 44%가 1년 후에 사라졌으며, 2002년 인터넷 사이트의 평균 수명은 44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함
- 세계 주요국가들은 인쇄자료 중심의 납본법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변화된 매체환경, 출판환경,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 온 · 오프라인 자료를 비롯해 전자책, 전자저널, 온라인구조화 데이터 등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범위를 설정하여 납본을 실시 중임
-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디지털자료 유형별로 납본 또는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 운영
- 도서관법의 정비를 통해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자료의 경우 그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체계도 명확히 해야함
- 주요국가들은 별도의 납본법이나 도서관법 하위에 납본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별도의 규정마련이 필요함

다. 국내 디지털 정보자원 관련 법률 및 규정

-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 「저작권법」
- 「국회도서관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부가가치세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라.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1차 조사 (1/4)

- 34개국을 대상으로 4가지 질문을 실시
  - 첫째, 전자출판물 납본법 또는 상응하는 법이 제정되어있는가?
  - 둘째, 전자출판물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 셋째, 해당 전자출판물이 법체계 하에서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넷째, 이용(access)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1차 조사 (2/4)

- **첫째, 전자출판물 납본법 또는 상응하는 법이 제정되어있는가?**
  - 총 34개국 중 26개국(76%)에서 전자납본법이 제정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었음
  - 6개국(18%)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
- **둘째, 전자출판물과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 12개국(35%)은 웹하베스팅을 포함해 무료 온라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며, 실제로 시행중이라고 응답.
- **셋째, 해당 전자출판물이 법체계 하에서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12개국(35%)이 전자책, 전자저널 그리고 유료 및 보호받는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할 권한이 있다고 응답.
  - 12개국 중 9개국은 2009년부터 시험적으로 또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책, 전자저널, 유료 및 보호받는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해오고 있다고 응답.
- **넷째, 이용(access)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6개국(덴마크,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은 기존 법령으로 쿼리기반 서비스의 구조화 데이터의 수집도 가능하다고 응답.

라.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1차 조사 (3/4)

- 온라인 출판물 납본자료의 국가별 이용방법 구분 (1/2)

구 분	무료 웹자료	전자책 & 전자저널 등	비고
영국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자료당 1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뉴질랜드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자료당 3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캐나다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관내이용 제한없음	다운로드 금지/ 복사허용
프랑스	관내이용 제한없음	관내이용 제한없음	학술적인 연구자에 게만 허용
독일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자료당 1명으로 동시접속자 제한	
덴마크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대학원과정 이상의 학술적, 통계적연구에 한함

라.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1차 조사 (4/4)

- 온라인 출판물 납본자료의 국가별 이용방법 구분 (2/2)

구 분	무료 웹자료	전자책 & 전자저널 등	비고
핀란드	관내이용 제한없음	관내이용 제한없음	
노르웨이	접근제공 없음	명시되지 않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접근 제한
리투아니아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관내이용 제한없음	
에스토니아	원격이용과 관내이용 모두가능	관내이용 제한없음	특정 유료출판물은 제한이 적용됨
아이슬랜드	관내이용 제한없음	관내이용 제한없음	원격이용을 추진중
슬로베니아	관내이용 제한없음 (원격이용 예정)	관내이용 제한없음	

마.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2차 조사 (1/3)

- 2011년 BL이 중심이되어 CDNL의 55개국을대상으로 조사
- 인쇄출판물을 대상으로 납본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 52개국(약 94%)
- CD-ROM 등을 대상으로 한 납본법을 보유한 국가 : 40개국(약 73%)
- 웹 하베스팅이 가능한 납본 법을 보유한 국가 : 22개국(약 40%)
- 도메인 하베스팅을 실시하는 국가: 14개국[약 25%]
- 선별적인 웹 하베스팅을 실시하는 국가: 18개국[약 33%]
-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대상으로 납본법을 보유한 국가: 24개국(약 44%)

마.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2차 조사 (2/3)

- 회원국에서 나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납본대상 디지털자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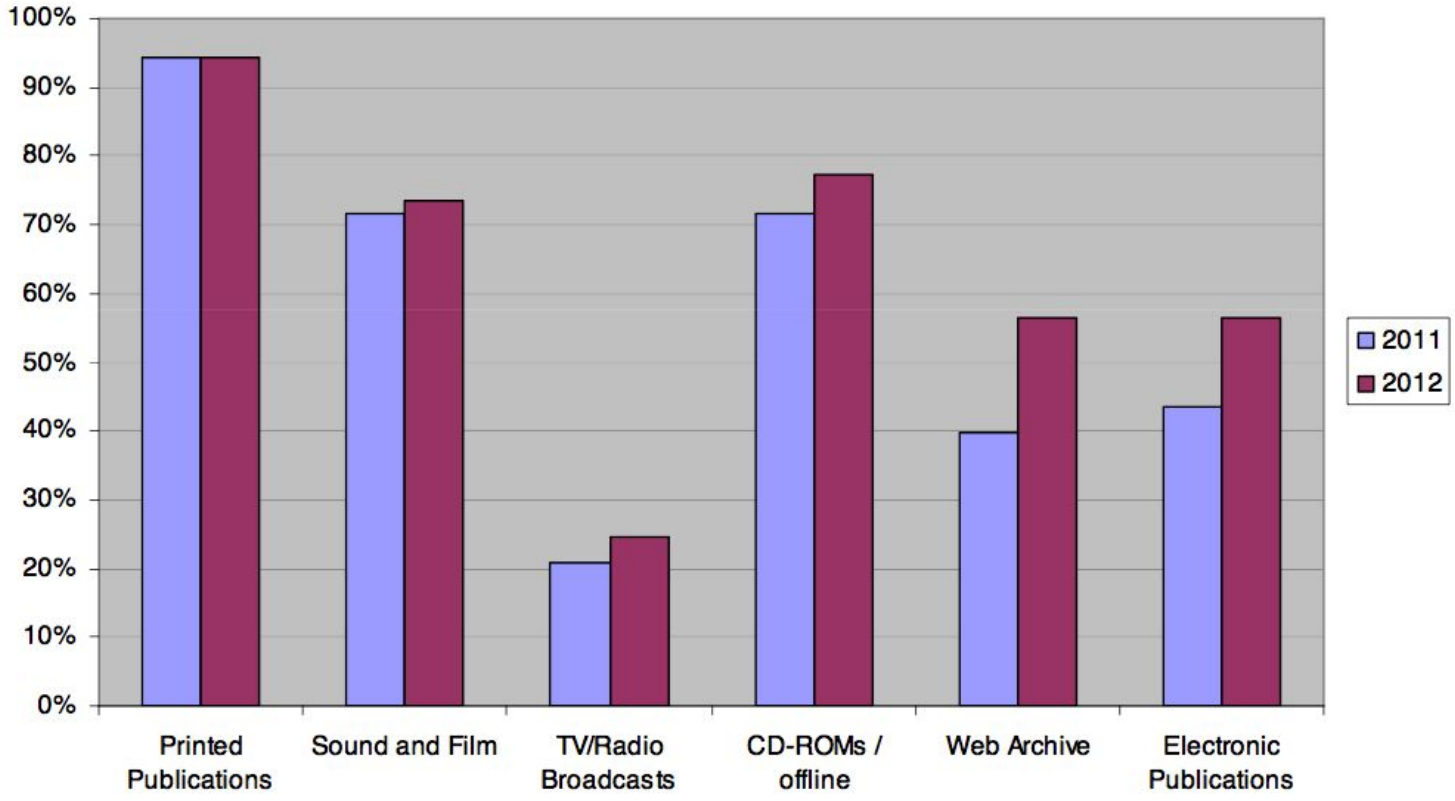

☞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을 확대하고 있음

마. 영국국립도서관(BL)의 e-Legal Deposit 2차 조사 (3/3)

- 납본자료(무료 및 유료전자출판물)에 대한 접근유형

접근유형	무료전자출판물	유료전자출판물
도서관내 이용과 원격이용 모두 제공	14개국	3개국
이용자수 제한없이 도서관내 이용만 제공	4개국	13개국
동시접속자를 1명으로 제한하여 도서관내 이용 제공	1개국	2개국
다크 아카이브(Dark Archive)	2개국	3개국
불분명한 국가	5개국	5개국

◈ 시사점

- BL의 1차(2009)와 2차(2011)에 걸쳐 실시한 조사는 참여한 국가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하지만, 두 조사 모두 BL이 주도적 진행하였으며, 2009년 참여국가 대부분이 2011년 조사에 참여하여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음
- 무료 웹자료, 전자책 및 전자저널을 납본 또는 수집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증가
  - ✓ 2009년 35% → 2011년 58%
- 납본 대상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음
- 납본된 디지털출판물에 대한 접근방식도 마련해야 함
  - ✓ 자료 유형별 접근 방안, 자료당 동시이용자 수 설정 방안, 관내 이용과 원격 이용 방안
  - ✓ 장애인을 비롯한 특수계층을 위한 접근 방안, 접근제한 자료 설정 등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1. 조사대상

자료 유형	의견 요청 기관	응답 여부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
	대한출판문화협회	○
	교보문고	○
	메키아	○
	바로북	X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2. 조사결과

- 납본과 이용은 별개
-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대상자료	납본제외자료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책 단행본	데이터베이스
	대한출판협회	전자책 단행본	
	교보문고	전자책 단행본, 학술논문 오디오북, 이러닝자료	
	메키아	전자책 단행본	앱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디지털파일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DVD	온라인영상자료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2. 조사결과

- 납본시기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시점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분기별
	대한출판협회	응답하지 않음
	교보문고	분기별 또는 일 년에 두 번
	메키아	일년에 한번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공표일로부터 60일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DVD출시 후 30일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2. 조사결과

- 납본주체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방법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발행처(제작자 또는 출판사)
	대한출판협회	출판사나 제작자
	교보문고	유통사
	메키아	유통사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행사 또는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유통사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2. 조사결과

- 납본방법 : 업로드 방식 선호
- 하드카피 생산범위 및 보존을 위한 복사 : 원칙적으로 반대
-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식
  - 현행법의 관련 조항 수정보완
- 도서관법의 효력
  - 강제성이 없으므로 효력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단, 장애인을 위한 정보격차해소에는 기여하였음

2. 조사결과

- 보상금

자료유형	이해 당사자	납본보상금	이용보상금
전자출판	한국전자출판협회	종이책 보상과 비슷한 수준	연간단위 라이선스 계약
	대한출판협회	종이책 보상과 비슷한 수준	-
	교보문고	응답하지 않음	응답하지 않음
	메키아	종이책	이용건수로 측정 반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사전송권협회	협회사용료기준
영상	한국영상산업협회	개인시청의 4-5배	유통최소가격기준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3. 시사점

- 납본과 이용은 별개
-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이 매체마다 상이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납본파일이 상이하므로, 납본단위 결정시 고려
- 납본주체

유통업체를 통한 납본	• Solution(DRM+Viewer)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 • 그러나,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출판사의 협조가 요구됨
저작권자를 통한 납본	•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 Solution개발해야 함 • 저작권자로부터 원본파일을 받아야 함 • 유출에 대한 보장 •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 파악어려움(self-publishing, 개인저작권자 등)
저작권수탁기관을 통한 납본	• 회원기관이 많지 않은 경우 어려움 • 마찬가지로 자체 solution 개발 및 저작권자로부터 동의필요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3. 시사점

- 납본방안
  - 업로드 방식 등 최대한 간단한 절차 / 납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
- 납본시기
  - 매체마다 상이함(분기별이 가능할 듯)
- 납본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납본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수준결정
  - 도서 외 다른 유형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 비과세 추진
  - 납본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납본목록을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에 제공하여 수집 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 경제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 유출 시 책임소재여부의 명확화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3. 시사점

- 기존 도서관법에 대한 효과
  - 납본이해당사자의 인식이 높지 않음
  - 실제 납본율 역시 높지 않음
  - 현재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로 명칭하고 있어, 도서 외 다른 유형의 자료를 납본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본율을 높이기 어려움

    ➢ 개정 도서관법의 효과 미비함

-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 기존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지털납본에 대한 의무강화
  - 개별적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높여야 함

4.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가. 인구통계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98	49.00	학력	고졸	17	8.50
	여자	102	51.00		대학 재학	46	23.00
연령	20대	91	45.50		대학 졸업	81	40.50
	30대	51	25.50		대학원 재학	19	9.50
	40대	29	14.50		대학원 졸업	37	18.50
	50대 이상	29	14.50	정보소외계층 여부	정보소외계층	9	4.50
					비 정보소외계층	191	95.50

4.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나. 일반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2	83	43.46	8.69	30.58
	오디오북	26	11	5.76	1.15	
	전자저널	9	39	20.42	4.08	
	데이터베이스	7	49	25.65	5.13	
	보고서	15	25	13.09	2.62	
	전자신문	4	63	32.98	6.60	
	전자사보	29	3	1.57	0.31	
	e-카탈로그	25	12	6.28	1.26	
	기타	27	7	3.66	0.73	
음악	전곡	5	62	32.98	6.60	7.33
	벨소리, 통화연결음	28	7	3.66	0.73	
방송	뉴스	3	83	43.46	8.69	26.70
	교양	11	36	18.85	3.77	
	스포츠	13	32	16.75	3.35	
	드라마	14	31	16.23	3.25	
	연예, 오락	10	39	20.42	4.08	
	교육	12	34	17.80	3.56	
영상	영화	1	98	51.31	10.26	14.87
	애니메이션	23	13	6.81	1.36	
	뮤직비디오	17	18	9.42	1.88	
	공연물(콘서트, 뮤지컬 등)	24	13	6.81	1.36	
이미지		20	14	7.33	1.47	1.47
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16	25	13.09	2.62	2.62
정보콘텐츠	전문정보	6	50	26.18	5.24	14.87
	생활정보	8	46	24.08	4.82	
	엔터테인먼트정보	18	18	9.42	1.88	
	위치기반정보	21	14	7.33	1.47	
	기타정보	22	14	7.33	1.47	
게임	온라인 · 모바일게임	19	15	7.85	1.57	1.57
기타		30	0	0.00	0.00	0.00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4.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다. 일반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2	82	42.98	8.59	22.72
	오디오북	17	21	10.99	2.20	
	전자저널	22	18	6.81	1.36	
	데이터베이스	21	14	7.88	1.47	
	보고서	25	9	4.71	0.94	
	전자신문	4	66	34.55	6.91	
	전자사보	28	1	0.52	0.10	
	e-카탈로그	23	10	5.24	1.05	
	기타	29	1	0.52	0.10	
음악	전곡	3	71	37.17	7.43	9.21
	벨소리, 통화연결음	19	17	8.90	1.78	
방송	뉴스	1	122	63.87	12.77	31.52
	교양	12	37	19.37	3.87	
	스포츠	10	40	20.94	4.19	
	드라마	18	21	10.99	2.20	
	연예, 오락	6	44	23.04	4.61	
	교육	13	37	19.37	3.87	
영상	영화	7	43	22.51	4.50	10.68
	애니메이션	26	9	4.71	0.94	
	뮤직비디오	11	40	20.94	4.19	
	공연물	24	10	5.24	1.05	
이미지		16	22	11.52	2.30	2.30
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20	17	8.90	1.78	1.78
정보콘텐츠	전문정보	14	34	17.80	3.56	17.38
	생활정보	5	52	27.23	5.45	
	엔터테인먼트정보	15	33	17.28	3.46	
	위치기반정보	8	42	21.99	4.40	
	기타정보	27	5	2.62	0.52	
게임	온라인 · 모바일게임	9	42	21.99	4.40	4.40
기타		30	0	0.00	0.00	0.00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4.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라. 일반이용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이용했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자료유형		선정순위	빈도	비율1(%)	비율2(%)	
전자출판	전자책	2	73	38.22	7.64	26.23
	오디오북	5	53	27.75	5.55	
	전자저널	8	48	25.13	5.03	
	데이터베이스	4	61	31.94	6.39	
	보고서	13	39	20.42	4.08	
	전자신문	11	45	23.56	4.71	
	전자사보	26	8	4.19	0.84	
	e-카탈로그	20	16	8.38	1.68	
	기타	29	3	1.57	0.31	
음악	전곡	12	42	21.99	4.40	5.03
	벨소리, 통화연결음	28	6	3.14	0.63	
방송	뉴스	9	47	24.61	4.92	17.70
	교양	15	33	17.28	3.46	
	스포츠	19	19	9.95	1.99	
	드라마	17	20	10.47	2.09	
	연예, 오락	21	15	7.85	1.57	
	교육	14	35	18.32	3.66	
영상	영화	1	74	38.74	7.75	15.81
	애니메이션	24	13	6.81	1.36	
	뮤직비디오	22	15	7.85	1.57	
	공연물	6	49	25.65	5.13	
이미지		25	10	5.24	1.05	1.05
이러닝(온라인 교육자료)		7	49	25.65	5.13	5.13
정보콘텐츠	전문정보	3	66	34.55	6.91	17.38
	생활정보	10	47	24.61	4.92	
	엔터테인먼트정보	18	20	10.47	2.09	
	위치기반정보	16	26	13.61	2.72	
	기타정보	27	7	3.66	0.73	
게임	온라인 · 모바일게임	23	15	7.85	1.57	1.57
기타		30	1	0.52	0.10	0.10

4.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마. 납본자료의 이용허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단순열람		다운로드		단순열람		다운로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13	59.16	117	61.26	112	58.64	108	56.54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5.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 시사점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이용요구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요구가 있음
  - 정보소외계층 역시 다양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요구가 있음
  - 디지털자료의 관내이용뿐 아니라, 관내 다운로드, 관외 이용, 관외 다운로드에 대한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남
- 이해관계자와의 인식차이
  -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납본된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관내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6.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

- 전문가 구성

성 명	소 속	구분	비고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	도서관계	1차 자문회의
장기영	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	전자출판계	
박정수	법무법인 단원 대표변호사	법조계	
박광기	교보문고 디지털사업단 과장	도서정보 유통계	2차 자문회의
이경훈	김영사 미디어기획부 부장	출판계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출판계	
곽철완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계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6. 납본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 자문

- 망라적 납본 및 선택적 납본
  - 망라적 납본
    - 1인출판사 또는 유통사
    - 파일 유형의 다양화
    - 식별자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등 디지털파일의 전체적 출판현황 파악이 어려움
    - 망라적 납본은 강제화하기 어려우며, 자발적 납본으로 진행되어야 함
  - 선택적 납본
    - 납본범위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제공되어야 함
    -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납본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납본방법
  - 파일의 형태 지정 우선순위의 파일형태를 먼저 납본 받는 방법
  - ISBN가 부여된 책이나 전자출판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전자책을 우선으로 납본
  - 인쇄책과 동시에 출판되는 것은 인쇄책을 우선으로 납본, 전자책으로만 출판되는 것을 우선 납본
  - 선택적 납본 우선 실시 + 망라적 납본은 자발적으로 실시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6. 납본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 자문

- 납본주체
  - 저작권자 또는 출판복제를 위임받은 자(출판사)가 되는 방안
    - 원본파일의 보존
    - 보상금을 저작권 도는 출판사에게만 제공
    - 관내이용은 제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Solution개발해야 함
  - 유통사가 되는 방안
    - 관내이용 가능
    - 보상금은 유통사와 출판사에게 분리해서 제공
    - 콘텐츠의 파일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납본의 중복성 우려 및 보상금 중복지급우려
- 이용
  - 이용과 납본은 별개로 접근해야 함
- 디지털자료 판권에 대한 이해
  - 디지털자료 판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함
- 납본활성화방안
  -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 모델 확립
  - 디지털 납본 기술력의 확보
  - 원본파일 유출방지대책 및 유출책임 여부의 명확화

Ⅲ. 납본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7. 시사점

- 납본과 이용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
- 단계적 법제화 고려해볼 수 있음
- 디지털자료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
- 포괄적 의견수렴단계 필요함
-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 보안, 유출방지 및 관내이용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 불법이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강력한 제재
    - 납본보상금의 현실화
    - 납본자료의 과세 면제방안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 및 유형 정립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의**

- 디지털자료는 정보 획득의 목적이나 감성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부호, 소리, 이미지, 영상 또는 이러한 표현수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물로서 제작 초기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거나 아날로그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인코딩한 자료
-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유・무선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자료를 의미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는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 디지털자료를 제외한 자료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구분	정 의
전자출판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중 종이책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화된 콘텐츠 또는 종이책 형태로 제작된 출판물 중 디지털 형태로 재 제작되어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 전자책,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전자사전,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전자사보, e-카탈로그
디지털 음악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음악 콘텐츠 : Full Track, 벨소리, 통화 연결음
디지털 방송	• 공중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사에서 직접 또는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방송용 콘텐츠 중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 : 뉴스, 교양, 스포츠, 드라마, 연예, 오락, 교육
디지털 영상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영상 콘텐츠 :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
이미지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이미지 콘텐츠 :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이러닝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
정보콘텐츠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콘텐츠 – 전문정보(경제, 의료, 법률 등),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정보, 위치기반정보, 기타 정보
게임	• 유 ·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 국립중앙도서관 기존 납본체계 및 ISO 14721 OAIS 참조모형 참조
- 웹 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의 자발적 납본으로 구분 하여 납본체계를 제시
  - 단, 웹 크롤러에 의한 웹자원 자동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시스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본주체의 자발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를 중심으로 제시
- 납본주체의 의무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는 입수 단계, 저작권 동의 단계, 저장 단계, 보상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납본 이후의 아카이빙 과정은 납본체계에서 제외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입수에서 저장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납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납본대상자료의 유형, 납본주체 등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납본주체에게 주지되어야 함
- 보상단계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 보상절차를 준용
  - 보상청구, 납본보상금 지불, 납본증명서 발급 등

1) 입수 단계

❖ **입수 단계**는 납본주체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입수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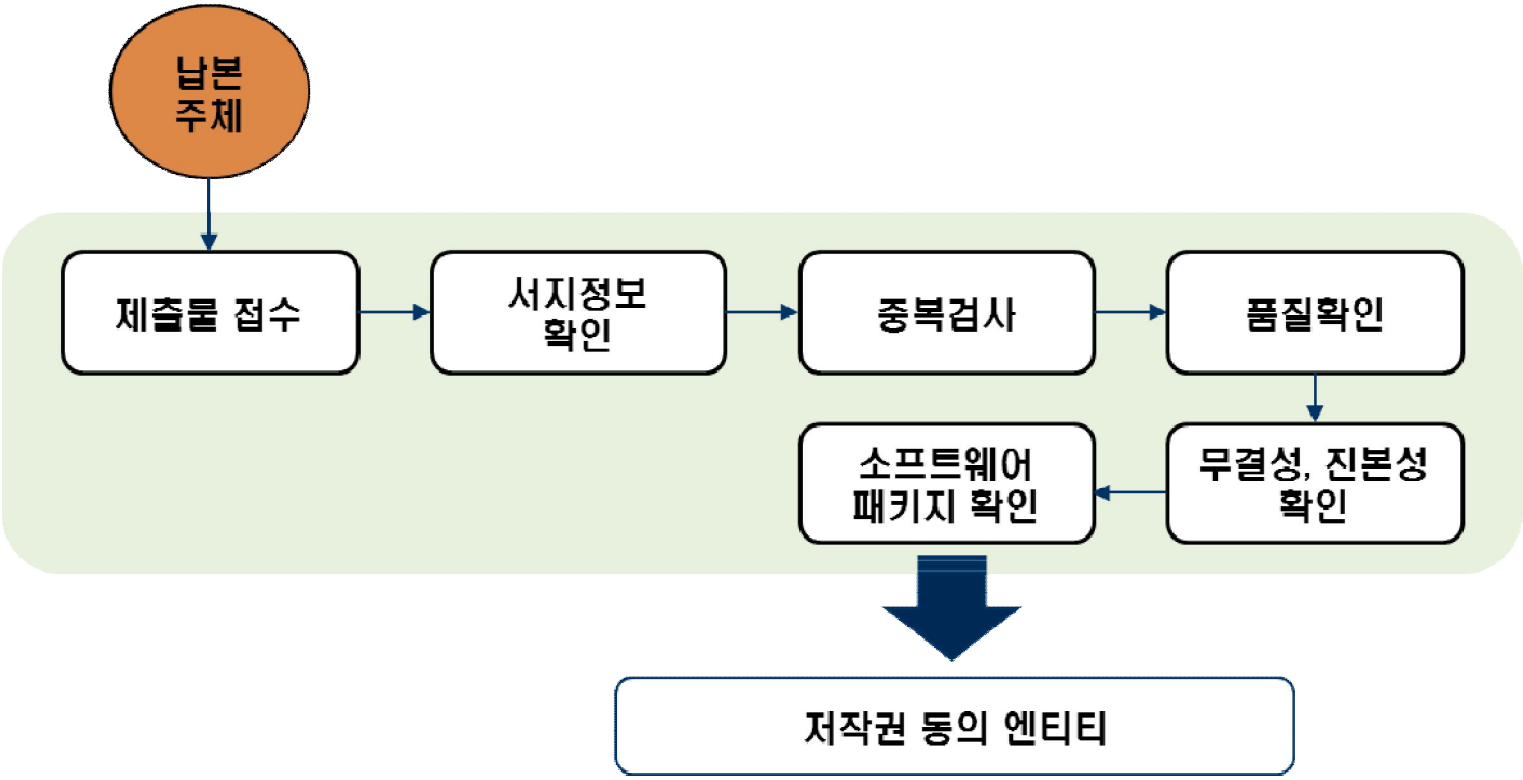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제출물 접수 단계**는 납본주체로부터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접수하는 단계
  - 온라인 · 오프라인 납본 병행
- **서지정보 확인 단계**는 납본시스템에 업로드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와 그 객체에 대한 서지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 납본기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와 함께 패키지로 입수되어야 하는 서지정보를 명확하게 지정, 공표
- **중복검사 단계**는 납본시스템에 업로드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납본시스템 내 기존 보존자료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 **품질확인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기관이 납본을 받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 **무결성 및 진본성 확인 단계**는 출처와 유통과정 분석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확인하는 단계
- **소프트웨어 패키지 확인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운영 및 응용소프트웨어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2) 저작권 동의 단계

❖ **저작권 동의 단계**는 입수 단계를 거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단계

- **납본자 인증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가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 납본자는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신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가격결정 단계**는 접수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
- **저작권 동의 단계**는 OASIS 시스템 수집보존프로세스 중 저작권관리 절차와 동일

3) 저장 단계

❖ **저장 단계**는 저작권 동의 절차까지 마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시스템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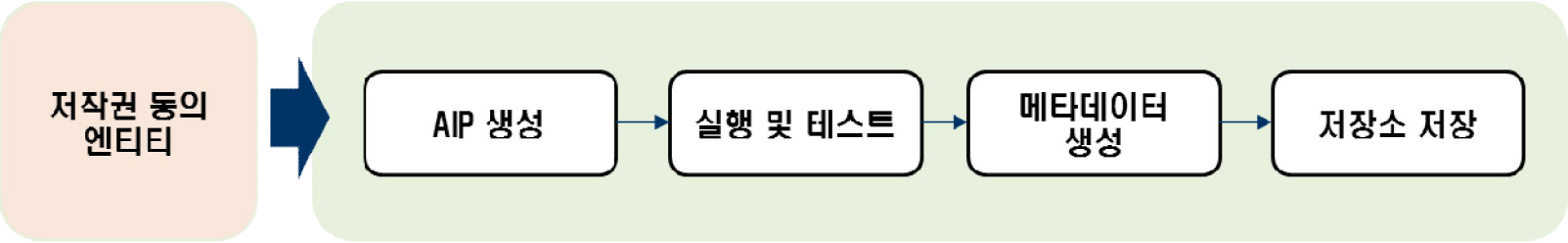

- **보존정보패키지(AIP) 생성 단계**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시스템 내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해 제출정보패키지를 보존정보패키지로 변환하는 단계
- **실행 및 테스트 단계**는 생성된 보존정보패키지를 실행하여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 **메타데이터 생성 단계**는 납본시스템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 OASIS 시스템에서는 더블린코어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
- **저장소 저장** 단계는 보존정보패키지를 납본시스템 저장소에 저장하는 단계

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수립

1) 납본 요소

- 납본 범위
-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 납본 제외 대상 자료의 유형
- 납본포맷, 납본시점, 납본부수
- 납본 자료의 수집
- 납본자료의 이용
- 납본에 대한 보상
-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 납본주체
- 납본기관과 의무
- 납본주체의 납본 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 납본자료의 갱신, 폐기
-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조사 · 분석 방법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세계 주요국 법령 조사 · 분석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선행연구 조사 · 분석

↓

저작권 소유 · 유관단체 및 관련기업 면담 내용 분석

↓

이용자 설문 내용 분석

↓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

납본 관련 전문가 자문 수렴 : 법조계, 저작권계, 학계 등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 수립

3) 납본요소별 가이드라인

① 납본 범위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디지털자료
2. 국내에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디지털자료
3.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디지털자료

②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

- 납본 제외대상 자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자료

❖ 우선순위

- 1차 자료
-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
- 동일한 조건이라면 짧은 수명주기, 자유접근이 가능한 자료
- 인쇄본이 없는 자료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자료보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자료
- 동일 내용의 자료가 복수의 포맷으로 출판된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맷의 자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③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 인트라넷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자료
-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자료
- 납본주체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렵거나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
-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기관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자료

④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 납본 포맷

- 싱가포르, CENL/FEP, 장보성, 남영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 동일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html, pdf, epub 등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든 파일 포맷이 납본되어야 한다. 단 동일 납본주체에 의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지만 이용자들이 시각 · 청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납본기관과 납본주체 간 합의하에 그 중 하나의 포맷만 납본할 수 있다.
- 동일한 자료가 인쇄포맷과 전자포맷 두 가지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두 가지 포맷 다 납본되어야 한다.
- 납본기관이 지시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할 경우, 납본주체는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 납본하여야 한다.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납본 시점

- 인쇄자료 및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을 납본의무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발행일 또는 제작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인도 쉽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발생일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중에게 공표한 날로 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납본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서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도 납본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적, 기술적 측면에서 인쇄출판물과는 다르므로 납본 시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납본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부수는 1부로 한다.

⑤ 납본 자료의 수집

- 납본기관은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을 통해 수집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납본기관은 사전에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납본주체는 납본하기 전에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나 장치는 제거하거나 불용화하여야 한다.
- 납본주체는 납본할 때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매뉴얼, 메타데이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본기관과 납본주체는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허락 받은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

⑤ 납본 자료의 수집 – 계속

- 납본기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은 즉시 해당 납본주체에게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원시 데이터(Raw Data) 납본 및 가공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⑥ 납본 자료의 이용

- 납본기관은 납본 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접근수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두 가지 접근수준은 공개접근(Open Access)과 제한접근(Restricted Access)이며 납본주체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본하여야 한다.
-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 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다.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비록 그 자료가 상업용일지라도 납본 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다.
-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며 비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은 되었으나 납본주체에 의해 이용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비매품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납본기관은 납본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존만하거나 제한된 이용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은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납본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납본 자료의 이용 – 계속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납본기관은 시각장애인용으로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관내 이용은 납본기관이 필요한 동시 이용자 수만큼 이용자 라이선스를 납본주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이용에 제공
  - 관외 이용은 건당 비용 지불 방식에 의거 정보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에게만은 허용을 고려

-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금이 필요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고 이용시킨다. 그러나 별도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는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

⑥ 납본 자료의 이용 – 계속

- 납본기관은 접근수준과는 상관없이 납본된 전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 납본기관은 납본된 자료의 검토 및 유지, 납본기관의 자체 연구에 납본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중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주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제작하여 납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공중의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 없이 납본주체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다면 납본기관은 공중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⑦ 납본에 대한 보상

- 이용을 배제한 보존 목적으로만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주체가 관내 이용을 허락한 경우 판매 정가의 100%를 지급한다.
-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지만 납본기관이 예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납본주체가 정한 임의적인 가격인 경우 판매 정가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납본보상금을 노리고 출판된 자료라는 의심이 들 경우 납본을 거부할 수 있다.
-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에는 보존과 이용에 관계없이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우선 무 보상으로 납본 받아 보존한 후,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그 유통가격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납본보상금을 지급한 후 관내에서 이용시킨다.

⑦ 납본에 대한 보상 – 계속

-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든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이든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주체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자료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납본자료 생산비용은 납본주체의 청구에 의해 지급될 수 있으며 납본주체는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	보존 및 이용	보상여부
상업용 자료 (정가 책정)	보존용	보상안함
	관내 이용 허락	판매 정가의 100%
상업용 자료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보존용	보상안함
	관내 이용 허락	판매 정가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완전공개, 공표된 비매품	보존용	보상안함
	관내 이용 허락	보상안함
가격 미결정 자료	보존용	보상안함
	관내 이용 허락	추후 판매 정가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⑧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 자유접근을 통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 자료, 완전공개 · 공표된 비매품, 가격 미결정 자료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한 이용보상방안은
  -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이용보상을 갈음한다.
  -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한다.
  -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의 경우,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며 별도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⑧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 계속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한 이용보상방안은
  -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인하여 납본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며 별도 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
  - 기타 보상방안은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와 동일하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에 대한 보상은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 접근제한 가격 미결정 자료는 관내 · 관외를 불문하고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보상방안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 제한접근 가격 미결정 자료 관외 이용에 대한 보상은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 이용보상금 지급 주기는 납본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1개월 이내 또는 1연 이상의 주기로 이용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접근수준	자료유형	이용구분	이용 보상 방안
자유접근	자료 유형 전체	관내이용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관외이용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 (정가 책정)	관내이용	•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갈음 •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 •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보상
		관외이용	•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 별도계약에 의해 보상하되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상업용 자료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관내이용	•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 납본보상금으로 갈음 •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 •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보상 •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납본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며, 별도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함
		관외이용	•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 별도계약에 의해 보상하되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가격 미결정 자료	관내이용	•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에 의거 보상
		관외이용	•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 •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음 •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상업용 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에 의거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

⑨ 납본 주체

- 대한민국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도메인명의 등록자가 출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에서 출판자라 함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를 제작하였으며 유통 및 배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 외국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에도 출판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납본의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등 해당 자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납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가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납본기관과 의무

❖ 납본 기관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국가도서관으로 한다.

❖ 납본 기관의 의무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기관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계획 수립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
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납본시스템 개발 및 보안체제 구축
4.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정리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납본 기관의 의무 – 계속**

5.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6.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상
7.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8.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무결성 및 진본성 확보
9.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10.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재원 확보
11.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13.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미 이행에 대한 제재
14. 그 밖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⑪ 납본주체의 납본 거절 및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 납본주체의 납본 거절

- 납본으로 인하여 납본주체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본거절 의사를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표시할 수 있다.

- 납본주체가 납본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여부는 납본주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납본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를 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이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며 자동수집에 의해 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본자료의 이용이 납본주체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납본주체가 허락한 범위, 시기 등의 이용 조건을 납본기관이 위반한 경우 등이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 납본 자료에 대한 이용거절 의사 표시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야 하며, 이용거절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납본된 자료의 이용 거절 – 계속

- 납본주체가 이용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납본기관에서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용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 납본기관에 의해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도의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이용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를 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거절 의사 표시가 정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⑫ 납본된 자료의 갱신, 폐기

❖ 납본된 자료의 갱신

-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수시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별로 축척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전자책, 학술저널 기사 등과 같이 고정형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되어 납본될 경우 납본기관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새로이 납본된 자료로 기존 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 납본된 자료의 폐기

- 납본기관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될 경우, 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 납본기관은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기존 자료가 납본기관의 보존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면 새로이 납본된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 납본기관은 동일 납본주체에 의해 동일 내용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어 납본되고, 납본된 복수의 자료를 이용자들이 시각, 청각적으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중 납본기관의 보존 목적 및 이용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포맷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다.

⑬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 납본기관은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에 한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 장애인의 납본자료 이용에 필요한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형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형사실과 변형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콘텐츠를 납본주체에게 통지 ·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납본자료 이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변형은 납본주체와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⑭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여야 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지만 납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과태료 부과이다.
-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쇄출판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정가(그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부과 · 징수한 과태료의 사용처는 납본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구입에 한 한다.

그러나 납본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납본기관은 납본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들과의 다각적인 협의, 홍보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납본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소 결 론

-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을 제외한 유・무선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자료
  - 전자출판, 디지털 음악, 디지털 방송, 디지털 영상, 이미지, 이러닝, 정보콘텐츠, 게임
- 납본 체계는 웹 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의 자발적 납본으로 구분
  - 납본주체의 자발적 납본을 위한 납본체계는 입수 단계, 저작권 동의 단계, 저장 단계, 보상 단계로 구성
  - 납본자료의 장기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가 필요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수립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제화와 기술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14개의 납본요소 추출하고 납본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납본 가이드라인은 추후 법제화 및 납본체계 구축과정에서 납본기관과 납본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함

V. 법제화 방안

1. 납본 요소별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

❖ 제4장에서 제시한 납본 요소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현안 사안은 없는지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피드백

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 방안의 유형

- 현행 도서관법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
-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V. 법제화 방안

❖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 분석

구분	현행 도서관법 개정 방안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 방안	통합 납본법 제정 방안
장점	• 현행 도서관법 일부 조문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보다 용이	•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 납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납본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 방안과는 달리 법체계상 균형이 유지됨
단점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관련 규정을 현행 도서관법에 추가하여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납본 관련 규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음	• 신규로 법을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현행 도서관법 개정 방안보다 쉽지 않음 • 법체계상 도서관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 납본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신규로 법을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현행 도서관법 개정 방안보다 쉽지 않음
비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행 도서관법 일부 개정 필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 현행 도서관법 일부 개정 필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V. 법제화 방안

❖ 온라인 디지털자료 법제화 방안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법체계의 균형, 납본의 중요성,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납본법 제정이 필요

- 납본기관이 자 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다만 법체계의 균형,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위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납본 법제화 방안은 가급적 채택하지 말 것을 제안
- 법에는 기본 원칙과 주요 사안만을 규정하고 시행에 있어서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

V. 법제화 방안

❖ 소 결 론

- 납본 요소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조사 ·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피드백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이 현실적
- 법체계의 균형, 납본의 중요성, 납본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납본법 제정이 필요
- 법에는 기본 원칙과 주요 사안만을 규정하고 시행에 있어서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VI. 결론

- 디지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 보존을 위한 출발점은 마련되었으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납본제도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세 가지 법제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음
  - 현 도서관법 개정,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법 제정, 통합 납본법 제정

-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전문가와 실무자, 납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디지털자료의 범위, 수집과 처리절차, 보상 및 저작권처리방법,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시행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납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도서관 관리시스템과 유연하게 연계된 납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납본 전문가의 육성,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